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02
----------	-----

2019년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 김용연 의원
2. 회부일자 : 2019. 2. 7.
3. 상정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2월 27일 상정·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용연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지역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현행 조례의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행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조례 목적에서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자 함(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에서 “격차”의 정의를 삭제하고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명시함(안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 현행 조례에서 지역별 격차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5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약을 위해 복지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시장에게 복지실태조사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결과 및 추이를 2년마다 공표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9조,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시행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1조, 제12조~제26조)
-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바,
- 조례상 중복용어 등을 정리하여 명확성 및 간결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조례 제명 변경

- 서울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생활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었음.
- 조례 제정 시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현행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로 제정·운영하였으나,
- 격차해소라는 용어는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광의의 의미에 포함되고, 서울시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제명의 변경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나. 정의 규정 변경(안 제2조제2호,제3호)

- 조례의 제명 변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격차’란 정의는 시민이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광의의 개념 속에 포함되므로 개정안은 정의 규정에서 ‘격차’용어를 삭제하였음.
- 또한,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은 2018년을 목표 연도로 정한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의 기한이 만료된 점을 고려하여,
-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의 서울시민이 향유해야 할 수준으로 ‘서울시민복지기준’정의를 수정하는 내용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하겠음.

다. 복지실태조사 등(안 제9조제1항-제3항)

-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복지실태조사로 구체화 하고 있는 바, 이는 서울시민의 복지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판단됨.
- 또한, 서울시민복지기준지표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규정으로 둔 것은 연도별 서울시민의 복지실태조사를 통계 관리함으로써 지역별 및 특정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의 누수 여부와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라.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변경(안 제10조제2항,제3항)

-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 및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추진 시 ‘적정기준’과 ‘최저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기준으로 제안·추진됨.

- 조문상 최저기준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저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공을 위한 지원사업 수립 및 시행임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 사료됨.
- 제10조제2항제1호~제6호까지의 법률¹⁾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등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조례에 법률이 정한 운영 및 종합계획을 나열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 제시하는 종합계획 등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삭제하는 것보다는 현행 조례대로 조례상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
(안 제11조)

- 개정안은 제3장 시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와 제4장 재정 지원 및 결과보고를 삭제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제10조제2항

1.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
4.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기본계획
5.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기본계획
6. 그 밖에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종합계획

바. 제11조~제26조 삭제에 대한 검토

- 개정안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복지 수준 제반 영역에서의 서울시민이 향유해야할 복지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제26조는 지역별 균형 발전에 기반한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지역별 격차해소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 균형 해소를 위해 균형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시행되고 있으며, 자치구간의 협조도 해당 조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역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11조에서 제26조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있음에 따라,
- 현행 조례의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정의, 복지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서울시민복지기준 2단계 추진 연구 및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추진시 ‘적정기준’과 ‘최저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기준으로 제안·추진됨에 따라

조문상 최저기준이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최저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겠으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공과 관련한 지원사업 수립 및 시행임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 사료됨.

□ 최저수준(또는 미달 시민)지원 관련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 서울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105개 지원사업을 계획, 95개 시행사업 중 85개 사업이 목표대비 정상 추진
- 5개 분야 목표달성을 위한 35개 지표 중 4개(실태조사후 평가4) 제외한 30개 지표 120.4% 목표달성

□ 서울시민복지기준 2기 추진 계획

- 준비위원회 구성 : 총괄분과, 5개(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분야별 분과
- 추진일정
 -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준비위원회 구성·운영 : '19. 2~6월
 -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평가지표 및 체계 연구(복지재단) : '19. 2~5월
 -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 : '19. 7월
 -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평가 : '19. 8월~'22년

□ 주요내용

번호	구분	운영방향
1	기준 설정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대 설정방향 확정 ▶사회권의 구체적 실현 ▶보편적 복지원리의 확산 ▶서울형 복지기준선으로 단일화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기준 ▶협치의 강화 ▶자치복지 선도
2	기준 설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단일기준으로 설정
3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중심형 운영방식 채택 - 기준.전략목표, 지표 체계 운영
4	운영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5대 분야와 생애주기·인구학적 대상 혼합형
5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Outcome), Impact(영향) 중심의 지표 관리
6	세부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사업은 선정하지 않고, 분야별 행정부서에서 전략목표, 지표 달성을 위한 자율적 사업 추진
7	설정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 단위('19~'22)
8	성과관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평가방식(이행, 성과, 종합) - 지표의 방향만 제시, 목표치는 행정부서 설정 - 2년단위 연구 및 시민모니터링 등과 연계 평가
98	위상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복지기준선은 시정 복지 방향을 제시하는 포괄적 개념 - 안정적 추진을 위한 조례화 추진 -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사회보장위원회(법정위원회) 위원 겸임 검토

□ 논의 요약(안)

▶ 1단계

분야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기준선	최저기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복지의 기준				
	적정기준	서울시민이 누리면 좋을 품위있는 삶을 위한 복지의 기준				
성과지표		35개 분야별 지표, 105개 사업별 목표 설정				
핵심과제		5대 분야별로 총 105개 사업설정				



▶ 2단계

분야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기준선(단일기준)		서울시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 목표치				
전략 목표	생애주기	기준선 중 핵심대상 또는 핵심과제를 선정, 향후 4년간 달성가능한 구체적 목표				
	인구학적대상					
성과 지표	성과(Outcome)	1단계 지표, 분야별 계획 지표 중 성과, 영향, 대표 등 체감형 지표 설정 구체적 정량수치가 아닌 방향				
	영향(Impact)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찬성 8명, 반대 0명】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2
----------	-----

발의년월일 : 2019년 2월 1일

발 의 자 : 김용연, 경만선, 이병도,
문장길, 이광호, 김기덕,
신정호, 장상기, 김희걸,
이세열, 김정태, 권영희,
김혜련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지역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현행 조례의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시민의 균형 잡힌 삶 향상에 중점을 두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조례 목적에서 격차해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자 함(안 제1조)

- 다. 용어의 정의에서 “격차”의 정의를 삭제하고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명시함(안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 라. 현행 조례에서 지역별 격차해소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5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 마.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수준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약을 위해 복지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시장에게 복지실태조사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대한 결과 및 추이를 2년마다 공표하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9조,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 바.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시행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 사.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11조, 제12조~제26조)
- 아. 조례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으로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생활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를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노력하여야 할 목표치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정책은 자치구 및 생활권역이나 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를 “정책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은 지역별 격차 해소와 더불어”를 “정책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시는 지역에 따른 격차의 수준”을 “시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격차개선보고서의 작성과 시책을”을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와 관련 사업에”를 “삶의 질 향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모든 시민은 지역 여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전제로 지역에 따른 격차해소와”를 “모든 시민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삶의 질 향상 및 격차와”를 “삶의 질 향상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를 “시장은”으로 한다.

제8조 제목 “균형 잡힌 삶의 질 및 격차해소를 위한 목표의 설정”을 “목표의 설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로 한다.

제9조 제목 “실태조사”를 “자료조사 및 결과공표”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2항 중 “실태조사를”을 “복지실태조사를”으로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은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부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9조의 복지실태조사 결과 최저수준이나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민·가구를 위한 집중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시민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사항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보장 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를 제12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생활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생 략)</p> <p>1. (생 략)</p> <p>2. "격차"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및 생활권역이나 동 단위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여러 복지 영역의 자원의 제공 및 배분, 접근 및 이용에서의 질적·양적 차이와 그 결과로 나타난 생활상태의 차이를 말한다.</p> <p>3. "서울시민복지기준"이란 2012년 10월 12일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합의에 따른 공동발표로 이루어진 기준 내용을 말한다.</p> <p>제3조(기본원칙) ① 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자치구 및 생활권역이나 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한다.</p> <p>② 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은 지역별 격차 해소와 더불어 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p> <p>③ ~ ④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 -----.</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삭 제〉</p> <p>2. -----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득, 돌봄, 건강, 주거, 교육 등 복지수준 제반 영역에서 서울시민이 향유해야 할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노력하여야 할 목표치를 말한다.</p> <p>제3조(기본원칙) ① ----- ----- 정책은 ----- -----.</p> <p>② ----- ----- 정책은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 <u>시는 지역에 따른 격차의 수준,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결과에 따른 진전 수준을 공개한다.</u></p>	<p>⑤ <u>시는</u> ----- ----- -----.</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p>	<p>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p>
<p>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서울 시민복지기준의 달성, <u>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격차개선보고서의 작성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u>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5조(시장의 책무) ① ----- ----- ----- <u>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을</u> ----- -----.</p> <p>② ----- <u>삶의 질 향상에</u> ----- -----.</p>
<p>제6조(시민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u>지역 여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전제로 지역에 따른 격차해소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한다.</u></p> <p>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u>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제6조(시민의 참여) ① 모든 시민은 ----- ----- -----,</p> <p>② ----- <u>삶의 질 향상에</u> ----- -----.</p>
<p>제7조(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 ① 시장은 <u>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7조(취약지역 등 우선 고려) ① 시장은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균형 잡힌 삶의 질 및 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의 설정) ① 시장은 <u>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분야별로 중기 목표와 연차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u></p>	<p>제8조(목표의 설정) ① ----- ----- <u>삶의 질 향상을 위해</u> ----- -----.</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목표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신설〉</p> <p>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격차 지표를 선정하고 이 격차 지표의 변화추이를 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은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3.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시민건강관리종합계획 4.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복지기본계획 5.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지원기본계획 6. 그 밖에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종합계획 <p>③ 제2항의 분야별 종합계획에는 해당 분야의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격차지표와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분야는 별도의 격차해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료조사 및 결과공표) ① ----- ----- 복지실태조사를 -----.</p> <p>② ----- 복지실태조사를 ----- -----.</p> <p>③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지표 관리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p> <p>④ 시장은 복지실태조사 결과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변화추이를 2년마다 공표하여야 한다.</p> <p>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p> <p>① 시장은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9조의 복지실태조사 결과 최저수준이나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민·가구를 위한 집중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③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의 생활을 하는 시민을 위한 집중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별도의 재정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u>제11조 ~ 제26조</u> (생략)</p> <p>〈신설〉</p>	<p>〈삭제〉</p> <p>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u>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u> 2. <u>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u>제27조(시행규칙)</u> (생략)</p>	<p>제12조(시행규칙) (현행 제27조와 같음)</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제9조(자료조사 및 결과공표)제3항,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제9조(자료조사 및 결과공표)제1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 경우, 해당사업을 서울시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

- 같은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 사업 [붙임] 참고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제9조	제1항 복지실태조사	서울시 복지실태 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서울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격차 실태 조사 및 분석
제11조	제1항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민관협치 의제 사업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제9조(자료조사 및 결과공표)제3항 해당]

1) 추계결과 ≙ 165,000천원(연평균 33,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통계관리시스템 구축비는 2020년 1회 발생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65,000천원

- 총비용 = 통계관리시스템 구축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통계관리시스템 구축비(제9조)	165,000	-	-	-	-	165,000
	소계(b)	165,000	-	-	-	-	165,000
	□ 총 비용(b-a)	165,000	-	-	-	-	165,000

○ 통계관리시스템 구축비 = 165,000천원

- 연평균 통계관리시스템 구축비 ≒ 33,000천원

· 자료 : 나라장터, 「통계정보 및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2017

나. 기술적 추계 곤란

○ 같은 조례안 제10조(분야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집중 지원사업 추진 시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내용과 지원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2180-7942

e-mail : intezer@seoul.go.kr

붙임

사업명 :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및 격차해소에 관한 연구용역

□ 사업내용

- 연구기간 : 2018. 1월~2018. 12월(12개월)
- 연구내용
 - 서울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격차 실태 조사 및 분석
 - 서울시민의 지역별 복지수급 실태와 복지수요 비교 분석
 -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수준 격차 분석
 - 서울시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보장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수립
- 총사업비 : 300,000천원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300,000	(x-) 300,000	(x-) 0
연구용역비	(x-) 0	(x-) 0	(x-) 300,000	(x-) 300,000	(x-) 0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300,000,000원 = 300,000천원
	증감사유	

자료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사업명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 사업내용

- 위원회 기능 및 역할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보장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자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관장 사항의 심의·의결
 -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등
- 개최시기 : 정기회(연4회), 임시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민소통형 복지정책 구축
 - 서울복지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민관협치 의제 사업 추진
 - 민관협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367,584	(x-) 367,584	(x-) 397,165	(x-) 29,581	(x-) 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46,604	(x-) 46,604	(x-) 47,985	(x-) 1,381	(x-) 2
사무관리비	(x-) 185,280	(x-) 185,280	(x-) 185,280	(x-) 0	(x-) 0
국외업무여비	(x-) 40,000	(x-) 40,000	(x-) 55,000	(x-) 15,000	(x-) 3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11,700	(x-) 11,700	(x-) 11,700	(x-) 0	(x-) 0
특정업무경비	(x-) 84,000	(x-) 84,000	(x-) 97,200	(x-) 13,200	(x-) 15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복지본부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 46,604천원 - 인부임 8,613원*14시간*4주*7명*12월 = 40,516천원 - 교통비	○ 복지본부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 47,985천원 - 인부임 8,900원*14시간*4주*7명*12월 = 41,866천원 - 교통비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60,000원*7명*12월 = 5,040천원	60,000원*7명*12월 = 5,040천원
	- 보험료 45,556,000원*2.3% = 1,048천원	- 보험료 46,896,000원*2.3% = 1,079천원
	증감사유	
	복지본부 초단시간 근로자 보수 등을 해당 세부사업 내 반영하여 1,371천원 증액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 18,0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7,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분기별 1회 25명*4회*150,000원 = 15,000천원 ▷ 소위원회 분기별 1회 4명*4회*150,000원 = 2,400천원 - 운영경비 = 600천원 ○ 시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 5,7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참석 수당 17*2회*150,000 = 5,100천원 - 운영경비 = 600천원 ○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운영 = 14,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평가 보고회 참석수당 33명*1회*100,000원 = 3,300천원 - 총괄위원회 참석수당 10명*3회*100,000원 = 3,000천원 -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27명*3회*100,000원 = 8,100천원 ○ 시민복지기준 추진계획 책자제작 15,000원*300부 = 4,500천원 ○ 시민복지기준 2기 시행 과제 연구 = 30,000천원 ○ 시민소통형 사회복지정책 구축 = 1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치역량강화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 4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 18,0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 17,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회의 분기별 1회 25명*4회*150,000원 = 15,000천원 ▷ 소위원회 분기별 1회 4명*4회*150,000원 = 2,400천원 - 운영경비 = 600천원 ○ 시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운영 = 5,7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참석 수당 17*2회*150,000 = 5,100천원 - 운영경비 = 600천원 ○ 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운영 = 14,4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평가 보고회 참석수당 33명*1회*100,000원 = 3,300천원 - 총괄위원회 참석수당 10명*3회*100,000원 = 3,000천원 -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27명*3회*100,000원 = 8,100천원 ○ 시민소통형 사회복지정책 구축 = 134,5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치역량강화 및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 45,000천원 ▷ 교육, 워크숍 기획 및 운영비 = 15,000천원 ▷ 회의수당 5,000,000*6분과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워크숍 기획 및 운영비 = 15,000천원 ▷ 회의수당 5,000,000*6분과 = 30,000천원 - 의제발굴 및 실천사업 = 55,000천원 ▷ 분과별 의제발굴사업비 10,000,000*5분과 = 50,000천원 ▷ 활동백서발간 = 5,000천원 ○ 사회복지 정책워크숍 = 12,68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0천원 - 의제발굴 및 실천사업 = 55,000천원 ▷ 분과별 의제발굴 사업 10,000,000*5분과 = 50,000천원 ▷ 활동백서발간 = 5,000천원 - 복지정책 제안 공모전 = 34,500천원 ○ 사회복지 정책워크숍 = 12,680천원
	증감사유	
	전년동일	
국외업무여비	○ 복지본부 국외업무여비 = 40,000천원	○ 복지본부 국외업무여비 = 55,000천원
	증감사유	
	복지본부 국외업무여비 15,000천원 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 1,600천원	○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 1,600천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 10,100천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 = 10,100천원
	증감사유	
	전년동일	
특정업무경비	○ 복지본부 5급이하 대민활동비 50,000원*140명*12월 = 84,000천원	○ 복지본부 5급이하 대민활동비 50,000원*162명*12월 = 97,200천원
	증감사유	
	복지본부 5급이하 대민활동비는 정원증가(22명)에 따른 13,200천원 증액함.	

자료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